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64호)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66호)

2024. .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전 재수의원(제2202764호)·김 태 호의원(제2203566호)

대표발의	1
1. 제안경위	1
가. 전재수의원안	1
나. 김태호의원안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가. 전재수의원안	1
나. 김태호의원안	2
3. 검토의견	4
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대상 및 채용비율 확대 (전재수의원안 및 김태호의원안 제29조의2제1항)	4
나. 지역발전에 기여한 이전공공기관에의 유인체계 신설 (전재수의원안 제29조의3)	10
다.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화 (전재수의원안 제29조의5)	13

I. 전재수의원(제2202764호)·김태호의원(제2203566호)

대표발의

1. 제안경위

가. 전재수의원안

- 1) 발 의 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2) 발 의 일 : 2024. 8. 13.
- 3) 회 부 일 : 2024. 8. 14.

나. 김태호의원안

- 1) 발 의 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 2) 발 의 일 : 2024. 9. 3.
- 3) 회 부 일 : 2024. 9.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전재수의원안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고, 이전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으로 진학한 사람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서비스의 구매증대를 위한 우선 구매 정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는 지역인재의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행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에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9조의 2제1항, 제29조의2제7항·제8항 및 제29조의3제1항 등).

나. 김태호의원안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

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되, 이전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역복귀를 유도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출신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출신 인재의 지역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3. 검토의견

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대상 및 채용비율 확대(전재수
의원안 및 김태호의원안 제29조의2제1항)

구 분	현 행	전재수의원안	김태호의원안
지역인재 대상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 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 정인 사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u>이전지역 소재 지방대 학원을 졸업(수료 포 함)하였거나 졸업 예 정인 사람</u>	<u>이전지역 소재 초· 중·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u>
지역인재 채용비율	대통령령으로 위임 (100분의 30 이상 채용)	<u>법률에 직접 규정 (100분의 50 이상 채용)</u>	(현행과 같음)
		<u>단, 채용비율 미달 시 이전지역에서 고 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전지역 외의 지방 대학, 지방대학원을 졸업(수료 포함)하였 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까지 채용 대상 확대</u>	

전재수의원안은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소재지의 지방대학원을 졸업(수료 포함)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채용의무 비율¹⁾을 100분의 50으로 상향함과 아울러 이를 법률에 명시하며, 채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이전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인재까지 채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안은 이전공공기관등 소재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지역인재로 보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원은 지역인재 대상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전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한 제외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2항 관련)

- | | |
|----------------------|-----------------------------------|
| 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2. 이전공공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

해당연도	비율(%)	도입연차	비율(%)
가. 2018년도	18.0	가. 1년차	18.0
나. 2019년도	21.0	나. 2년차	21.0
다. 2020년도	24.0	다. 3년차	24.0
라. 2021년도	27.0	라. 4년차	27.0
마. 2022년도 이후	30.0	마. 5년차 이후	30.0

비고

제2호에서 도입연차는 법 제29조의2의 적용을 받아 최초로 채용공고를 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차”로, 그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년차” 등으로 구분한다.

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전공공기관등은 이전지역의 인재를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인재 채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전재수의원안은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원까지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대학원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됨.

그리고, 김태호의원안은 학업 이후 지역으로 재유입되어 일하는, 이른바 ‘U턴 인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전공공기관등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인력 풀을 확대함과 아울러, 우수한 인재를 지역으로 재유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²⁾·공공기관 채용

2)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등에 도입되어 있음.

특히, 교육부 소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2024. 8. 14. 시행)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었음³⁾.

지역인재의 기준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두 법률은 지방대학 출신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서, 지방대육성법의 경우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⁴⁾되어 있는 상황으로,

어느 하나의 법률만 개정될 경우 공공기관 취업 및 채용 부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대육성법이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범위에 있어 보다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음.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의안번호 220109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비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 이후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함.

【혁신도시법과 지방대육성법 상 지역인재 채용제도 차이】

구분	혁신도시법	지방대육성법
채용비율	<u>100분의 30</u>	<u>100분의 35</u>
채용대상	<u>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u> 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u>지방대학</u> 의 학생 또는 졸업한 사람
채용기관	<u>이전공공기관등</u>	<u>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u>
기타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u>

아울러, 지방대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과의 입장, 지역인재 범위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의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전지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⁵⁾의 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U턴 인재’)를 지역인재로 포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5)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구체적인 인정요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제도 신설 당시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되었으며, 법률에서 의무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유사제도사례⁶⁾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역차별 논란 등 갈등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추가적으로, 지역인재 대상 및 채용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지역인재 대상 및 채용비율 확대 관련 관계기관 의견 】

구분	주요 의견
충청북도 (찬성)	○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U턴인재 개념 찬성
법무부 (반대)	○ 채용비율 변경 필요 시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고, 이전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출신 대학·대학원생에 대한 취업기회 제한 우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반대)	○ 법률에 의무채용비율 50%를 명시하게 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별 기관 특수성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됨
한국전력기술 (반대)	○ 대학원 졸업자 포함 찬성 ○ 법률에 의무채용비율 50%를 명시하게 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별 기관 특수성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됨
기술보증기금 (반대)	○ 부산 지점은 8.97%에 불과, 이전지역(부산)인재를 50% 이상 계속 채용 시 전국 단위 인사배치와 인력운영이 어렵고, 여타 공공기관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이전지역(부산)인재 채용비율은 100분의 35가 합리적
한국수력원자력 (반대)	○ 이전지역인재 목표 운용 중 특정대학 출신 쏠림현상 문제 등이 발생한 바 상향하더라도 35%가 적정하며, 부작용이 심화될 것인 바,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도 고려 ○ 지역인재 대상 확대 시, 비수도권 U턴인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U턴인재까지 확대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타당

6) (공무원임용령) 서울 제외 지역인재 채용비율 20%(7급 30%), 양성평등 채용비율 30%

나. 지역발전에 기여한 이전공공기관에의 유인체계 신설
(전재수의원안 제29조의3)

현행	전재수의원안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 ----- ----- ----- -----, -. <u>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략)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이전공공기관을 선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⑥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에 기여한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재수의원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지역발전에 기여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포상 및 조세 감

면·보조금 지급 등의 유인체계를 신설하는 내용임.

현행법⁷⁾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이 매년 이전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제2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은 매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유인체계에 대한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전공공기관의 예산을 지역발전 기여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유인이 없는 상황임.

전재수의원안과 같이 이전지역 발전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조하고, 포상·조세 감면·보조금 지급 등의 유인체계를 신설하는 것은,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과 이전공공기관이 상생 발전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제29조의3제2항제4호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계획 수립 시 포함하고 있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실익이 없으며,

조세 감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⁹⁾등 조세 관련 법률 등을 통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률의 개정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다.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화
(전재수의원안 제29조의5)

현행	전재수의원안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u>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u>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③ (생략)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 <u>이전공공기관</u> ----- ----- <u>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u> ② ----- ----- ----- <u>우선</u> <u>구매 비율을 반영한</u> ----- ----- -----. ③ (현행과 같음)

전재수의원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의무화하는 내용임.

이전지역의 재화·서비스의 우선구매 비율을 규정할 경우 이전공공기관이 해당 재화·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 이전공공기관과 이전지역의 상생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편, 이전지

역의 산업 특성 등에 따라 구매 등이 제한될 수 있어 우선구매 비율 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이전지역별 생산 재화·서비스, 이전기관별 특성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할 때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현재 이전지역별로 이전공공기관의 구매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우선구매 촉진을 견인하는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¹⁰⁾하여 시행 중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1

10) 「지역물품 우선구매 운용기준(‘20.9.19.)」을 마련하여 이전지역별 우선구매 협의회(시·도 주관)에서 이전기관별 목표비율 자율적으로 설정·권고. 단, 우선구매 목표비율은 과거 구매실적을 분석하여 최근(3년 이내) 평균 우선구매 비율 이상 설정을 권장